

## 뉴욕시 인적자원관리국(New York City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및 의견 개진 기회 안내

제안된 개정안은 어떤 것인가요? 뉴욕시 인적자원관리국(HRA)은 뉴욕시 규정(Rules of the City of New York) 제68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뉴욕시 주택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이 채택한 8조 기준에 맞춰 CityFHEPS 아파트 및 1인실 공동 주택(Single Room Occupancy, SRO) 사용에 대한 최대 임대료를 즉시 인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에 더해 HRA는 뉴욕시와의 계약하에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영구 거주 주택으로 이사하는 가구에 대해, 뉴욕시가 임대료를 장기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기반의 CityFHEPS 수립을 제안합니다. 제안된 개정안은 또한 지금은 없어진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불필요한 장과 절의 삭제, LINC VI, CityFHEPS, Pathway Home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장의 개정, 기타 조항에 대한 문체나 기술적인 변경을 포함합니다.

공청회는 언제 어디서 진행되나요? 공청회는 Zoom 에서 원격으로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오전 10:00 부터 시작됩니다. 원하시는 분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공청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줌(영상 및 음성):

<https://us02web.zoom.us/j/87610815906>

또는 [www.zoom.us](http://www.zoom.us) 에 방문해 "Join a Meeting"(미팅 참여)를 클릭한 뒤, 미팅 ID 876 1081 5906 을 입력하십시오.

#### 전화(음성만):

(646) 876-9923. 안내 음성이 나오면 다음 미팅 ID 입력: 876 1081 5906

원 탭 모바일 번호: +16468769923,87610815906#

제안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구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뉴욕시 규정 웹사이트 <http://rules.cityofnewyork.us> 를 통해 뉴욕시 HRA 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이메일.** NYCRules@hra.nyc.gov 를 통해 이메일로 서면 의견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제목 줄에 "Rental assistance amendments"(임대료 보조 개정안)를 넣어 주십시오.
- **우편.** 아래 주소로 서면 의견서를 송부할 수 있습니다.

HRA Rules  
c/o Office of Legal Affairs  
150 Greenwich Street, 38<sup>th</sup> Floor  
New York, NY 10007

용건이 임대료 보조 개정안(rental assistance amendments rules)에 대한 의견 제시라는 점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917-639-0413 번으로 서면 의견서를 팩스 송부할 수 있습니다. 제목 줄에 “Rental assistance amendments”(임대료 보조 개정안)를 넣어 주십시오.
- 공청회 출석을 통한 의견 개진. 2021년 8월 30일 당일 또는 그 전에 929-221-7220 번으로 전화하거나 [NYCRules@hra.nyc.gov](mailto:NYCRules@hra.nyc.gov) 로 이메일을 보내 공청회 의견 개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순서대로 발언자를 호명하며 최대 3분까지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마감 기한이 있나요? 의견서 제출 마감 기한은 2021년 8월 30일 자정입니다. 우편을 통해 전달되는 것을 포함해 모든 의견서는 2021년 8월 30일까지 HRA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공청회 참석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공청회에 참여하기 위해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합리적인 수준의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NYCRules@HRA.nyc.gov](mailto:NYCRules@HRA.nyc.gov) 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929-221-7220 번으로 전화하여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 시간을 위해 사전 통지가 필요합니다. 2021년 8월 23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된 개정안에 대해 개진된 의견을 직접 검토해볼 수 있을까요? 다음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제안된 개정안에 관해 온라인으로 접수된 의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http://rules.cityofnewyork.us/> 공청회 후 빠른 시일 내에, 제안된 개정안에 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된 모든 의견서 사본, 서신으로 접수된 모든 의견서 사본과 구두로 전달된 모든 의견의 요약본이 HRA 웹사이트에 공개됩니다.

이번 HRA 규정 제정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뉴욕시 헌장(New York City Charter) 603, 1043 조, 뉴욕 사회보장서비스법(Social Services Law) 34, 56, 61, 62, 77 및 131 조에 근거하여 HRA는 제안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HRA 규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HRA 규정은 뉴욕시 규정 제 68 편에 있습니다.

제안된 개정안은 HRA 규정 의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예.

규정 제정 과정은 어떤 법률에 따르나요? 규정 입안 또는 개정 시, HRA는 반드시 뉴욕시 헌장 1043 조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본 공지사항 역시 뉴욕시 헌장 1043 조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뉴욕시 인적자원관리국(New York City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 제안된 개정안의 근거 및 목적

뉴욕시 행정 법령의 최근 개정을 이행하기 위해, HRA 는 HRA 가 연방 법규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 24 편 982.503 조에 따라 최대 임대료를 설정하게 함으로써 아파트와 1 인실 공동 주택 사용에 대한 최대 임대료를 높일 것은 제안합니다. 이는 뉴욕시 주택국이 연방법에 따라 뉴욕시에서 8 조 프로그램을 집행하기 위해 채택한 기준에 따릅니다. 언급한 뉴욕시 행정 법령의 개정은 2021 년 12 월부터 발효됩니다. HRA 는 CityFHEPS 최대 임대료를 즉시 높임으로써 해당 최대 임대료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더해 HRA 는 뉴욕시와의 계약하에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영구 거주 주택으로 이사하는 가구에 대해, 뉴욕시가 임대료를 장기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기반의 CityFHEPS 수립을 제안합니다.

#### 배경:

뉴욕시는 보호소에 있거나 뉴욕시 보호소에 들어갈 위험에 처한 이들의 임대료 보조를 위해, 2014 년과 2015 년에 지역사회 내 거주(Living in Communities, LINC), 뉴욕시 가족 강제 퇴거 방지 보조금(City Family Eviction Prevention Supplement) 및 뉴욕시 가족 보호소 퇴소 보조금(City Family Exit Plan Supplement, CITYFEPS), 특별 퇴소 및 예방 보조금(Special Exit and Prevention Supplement, SEPS)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다양한 세입자 기반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습니다.

2017 년 9 월에 있었던 *Tejada v. Roberts*, 인덱스 번호 453245/2015(뉴욕 대법원) 소송에 대한 합의는 가족 강제 퇴거 방지 보조금(FEPS) 프로그램을 임대료 보조 수준이 높은 확장 프로그램으로 바꿀 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욕주 가족 노숙 및 퇴거 방지 보조금(Family Homelessness & Eviction Prevention Supplement, FHEPS) 프로그램이었습니다. HRA 의 CITYFEPS 프로그램 참여 가족 중 다수와 LINC III 프로그램 참여 가족 대부분은 *Tejada* 합의안이 발효된 이후 곧 뉴욕주 FHEPS 프로그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018 년 가을, 보호소 입소 위험에 처한 가구를 위해 뉴욕시가 자금을 지원하는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HRA 는 기존 LINC I, II, IV 및 V 프로그램, SEPS 프로그램, 그리고 LINC III 및 CITYFEPS 프로그램의 남은 부분을 대체하는 간소화된 단일

프로그램으로서, 뉴욕시 노숙 및 퇴거 방지 보조금(City Fighting Homelessness and Eviction Prevention Supplement, CityFHEPS)을 수립하였습니다. LINC VI 프로그램 참여 가구를 제외하고 LINC, CITYFEPS 및 SEPS 프로그램 참여 가구는 CityFHEPS 프로그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5년간 친구 및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LINC VI 프로그램은 1년간 더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Pathway Home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LINC VI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는 수혜 자격을 유지하는 한 해당 프로그램으로 계속 혜택을 받게 됩니다.

LINC 1-5, CITYFEPS 및 SEPS 프로그램의 단계적 종단이 완료되었으므로, HRA는 7장 A, B 절(LINCs 1-5에 관한 규정)과 8장(CITYFEPS 및 SEPS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10장(CityFHEPS에 관한 규정)과 11장(Pathway Home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여 해당 프로그램들에 관련해 불필요해진 사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최대 임대료 수준을 높이고 프로젝트 기반의 CityFHEPS를 수립하는 것에 더해, HRA는 CityFHEPS 및 Pathway Home 규정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는 기술적인 변경을 제안합니다.

- CityFHEPS 및 Pathway Home의 “거리 노숙”에 대한 정의를 단순화합니다.
- 잠재적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해, 가까운 친척이 CityFHEPS 가구의 임대주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법적 책임이 있는 친척이 Pathway Home 가구의 호스트가 되는 것을 금지합니다(단,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러한 금지 사항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주법에 따르기 위해, 임대료 규제 대상 세대에 대하여, 허가된 연중 임대료 인상을 금지하는 CityFHEPS 규정을 삭제합니다.
- CityFHEPS 프로그램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공공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CityFHEPS 최대 임대료에 임대료 합리성 요건을 추가합니다.
- 현재의 관행에 맞도록, CityFHEPS “투 스테이 케이스”(참가자가 CityFHEPS를 이용해 자기 집에 거주)의 경우 임대료 선불을 1개월 선불로 제한하고, 모든 임대주가 첫 1개월만 임대료를 선불로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합니다.

- CityFHEPS 세입자 기반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CityFHEPS 의 다른 수혜 자격을 충족한다면 SCRIE 또는 DRIE 하에서 임대료가 동결된 아파트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합니다.
- 현재의 관행에 맞도록, 호스트 가족이나 Pathway Home 이 제공될 가족 중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ACS 가 Pathway Home 제공 전에 수행하는 평가를 업데이트합니다.
- 이 밖에도 여러 문체나 기술적인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뉴욕시 헌장(New York City Charter) 603 및 1043 조와 뉴욕주 사회보장서비스법 34, 56, 61, 62, 77 및 131 조에 근거하여 HRA 는 본 규정을 공포할 권한이 있습니다.

밑줄 표시된 부분이 새로운 내용입니다.

삭제된 내용은 [대괄호]로 표시합니다.

**1조.** 뉴욕시 규정 제68편 7장은 "지역사회 내 거주 가족과 친구 재결합(LINC VI)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변경한다.

**§ 2.** 뉴욕시 규정 제68편 7장 A절(LINC I, II 및 III)과 B절(LINC IV 및 V)은 폐지한다.

**§ 3.** 뉴욕시 규정 제68편 7장 C절은 제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되며 C절을 구성하는 조항의 번호를 다시 매겨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7-18] § 7-01 정의.**

본 [절]장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들은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된다.

[(a) "가구"는 공공 지원을 받을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본 절에 따라 LINC VI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했거나 현재 수령하고 있는 개인을 의미한다.]

(a) "국장"은 DSS 국장 또는 국장의 대리인을 의미한다.

(b) “DHS”는 뉴욕시 노숙인 서비스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를 의미한다.

(c) “DSS”는 뉴욕시 사회복지 서비스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로서 HRA 와 DHS 로 구성된 단체를 의미한다.

[(b)] (d) [“호스트” “호스트 가족”은 LINC VI 임대료 보조금이 적용될 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고자 하는, 가구가 아닌 모든 개인을 의미한다. [호스트] “호스트 가족”은 1 차 임차인을 포함하며 1 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

(e) “가구”는 공공 지원을 받을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본 장에 따라 LINC VI 임대료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개인을 의미한다.

(f) “HRA”는 뉴욕시 인적자원관리국을 의미한다.

[(c)] (g) [그] “지역사회 내 거주 가족과 친구 재결합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 혹은 “LINC VI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은 [본 절에 따라 수립되고] 이 장에 설명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d) “프로그램 참가자”는 LINC VI 임대료 보조금이 적용되었거나 적용 중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가구 구성원을 의미한다.]

[(e) “제 1 차” (h) “1 차 임차인”[은]이란 LINC VI 임대료 보조금이 적용될 주택에 대하여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1 차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 혹은 그 주택의 소유자를 말한다. 해당 1 차 임차인은 반드시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i) “프로그램 참가자”는 LINC VI 임대료 보조금이 적용되었거나 적용 중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가구 구성원을 의미한다.

#### **[§ 7-19] § 7-02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의 운영.**

HRA 는 LINC VI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단, HRA 는 본 장 7-20 조의 (a)항 (1)호에 따라 DHS 보호소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DHS 와 협의하여 최초 자격 유무를 결정한다].

#### **[§ 7-20 최초 자격 및] § 7-03 갱신.**

[(a) LINC VI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을 위한 최초 신청 자격.

(1) 최초 연도 LINC VI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 신청 자격이 되려면, 가구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A) 해당 가구 중 한 명 이상은 공공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하며, 공공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가구 구성원은 그러한 혜택을 수령하여야 한다.

(B) 해당 가구는 구성원을 포함해야 한다.

(i) 뉴욕 행정 규정(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제 18 편 369.2(c)조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 자녀 또는 임산부 한 명과 다음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최소 한 명 있어야 한다.

(I) 뉴욕 행정 규정 제 18 편 351, 352 부에 의해 DHS 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뉴욕 행정 규정 제 18 편 452.2(g), 452.9 조에 의해 HRA 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소에 거주할 자격이 있다.

(II) 현재 뉴욕시 보호소 시스템에 거주한다. 또한

(III) 역일 기준으로 최대 3 일의 공백을 제외하고 최소 90 일 연속으로 뉴욕시 보호소 시스템에 거주하였다.

(ii) 본 장의 7-10 조 (b)항 (1)호에 규정된 설명을 충족하고 2015 년 5 월 1 일부터 2015 년 7 월 31 일 사이의 기간에 DHS 가 운영하거나 DHS 를 대신하여 운영되는 보호소에 거주했던 구성원 또는

(iii) 본 장의 7-10 조 (b)항 (2), (3) 또는 (4)호에 규정된 설명을 충족하는 구성원.

(C) 가구는 자신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본 장 7-21 조 (a)항의 표에서 정한 최대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월 임대료로 받는 것에 동의하며 뉴욕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가족 혹은 친구로 구성되는 호스트 가족을 지정하였어야 한다.

(D) 호스트 가족과 호스트 가족의 주택은 본 장 7-24 조 (j)항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E) 가구의 총소득 합계는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매년 정하는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의 20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HRA 는 최소한 다음의 구성원을 한 명 이상 포함하는 경우 본 항 (1)호 (8)목의 clause (i) item (I)-(III)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구성원 포함에 대한 요구 사항을 포기할 수 있다.

(i) 가구 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보호소에 대한 신청을 한 것이 뉴욕시 보호소 시스템에서 나온 지 10 일 이내여야 한다. 또한

(ii) 가구의 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뉴욕시 보호소에서 나온 날짜에 본 항 (1)호 (8)목 clause (i) item (I)-(III)에 규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했다.

(3) LINC VI 임대료 보조금 수령을 위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수는 가용 자금 규모에 따라 제한된다. 신청서는 HRA 가 DHS 와 협의하여 정한 양식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b) 1 차연도 이후 갱신.]

[(1)] **(a)** 자금의 가용 여부에 따라 LINC VI 임대료 보조를 받고 있는 가구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에 지속적으로 부합할 경우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각 1년씩 4번 갱신할 수 있다.

[(A)] **(1)** 해당 가구의 총소득 합계는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수립하는 연방 빈곤선의 200%를 초과하지 않는다.

[(B)] **(2)** 해당 가구에 그런 행위가 가능한 경우, 그 구성원이나 해당 가구가 자격이 있는 고용을 획득, 유지 및/또는 확대하거나 또는 혜택을 확보하는 등과 같이, 해당 가구를 도울 수 있도록 마련된 지속적인 사례 운영 활동에 해당 가구의 최소 1명이 계속하여 종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C)] **(3)** 공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모든 구성원이 공공 지원을 받아야 한다.

[(2)] **(b)** HRA 는 해당 가구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각 연도가 끝나는 시점에 LINC VI 임대료 보조금 갱신 자격을 결정하게 되며, 이는 자금의 가용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 각 1개년 갱신 기간의 개시에 앞서, HRA 는 [본 장 7-21] **7-04**조에 따라 해당 가구의 월별 임대료 보조금을 재산정한다. [본 장 7-22] **7-05**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의 갱신 기간 중에는 월 임대료 보조금 금액은 변경되지 않는다.

[(3)] **(c)** HRA 는 그 재량에 따라 사례별로 판단하여 [본 항 (1)호] **7-03(a)**조에 기재된 요구 조건을 면제시킬 수 있다. 가구가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의 변경으로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갱신을 하지 않으면 해당 가구가 보호소로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등일 때 그러하다.

**[§ 7-21] § 7-04 최대 월 임차금 지불 의무와 임대료 보조금 금액의 계산.**

(a) 최대 월 임대료.

(1) 해당 가구의 월 임대료는 아래 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족 구성원 수	1 – 2	3 – 4	5명 이상
최대 임대료	\$650	\$750	\$1,000

(2) 1차 임차인이 공공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가구의 월 임대료는 해당 가구의 리스 또는 렌트 계약 발효일자의 1차 임차인이 주택에 대하여 지불하는 임대료와 뉴욕 행정 규정



제 18 편 352.3 조에 따라 수령하는 1 차 임차인의 보호소 수당과의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어떤 경우에도 해당 가구의 월 임대료는 해당 가구의 임대료 비례 배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구의 임대료 비례 배분액 결정은 [뉴욕 행정 법규] 뉴욕 행정 규정 제 9 편 2525.7 조에서 규정한 공식이나 그에 상당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b) 임대료 보조금 금액.

(1) 월 임대료 보조금 금액은 해당 가구의 월 임대료와 동일하다.

(2) HRA 는 해당 가구가 자격을 유지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며, 해당 프로그램의 자금이 가용하다면 월 임대료 보조금 금액을 매달 주택의 1 차 임차인에게 직접 지불한다.

**[§ 7-22] § 7-05 이사.**

(a) LINC VI 임대료 보조금을 받는 가구는 새 주택으로 이사하면 LINC VI 임대료 보조금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단, HRA 의 승인을 얻어 뉴욕 시내의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유지된다. LINC VI 프로그램 참가자는 새 주택으로 이사하기 전에 그와 같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참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그와 같은 이사 승인을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HRA 는 이사 후에 신청된 승인 요청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해당 가구가 현재의 호스트 가족과 함께 이사를 하는 경우, HRA 는 이사를 승인할 수 있다. 다른 모든 경우, HRA 는 프로그램 참가자가 이사를 하는 충분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한 주거지에서 다른 주거지로 이사하는 것을 승인한다. 요청된 이사의 결과로 월 임대료가 인상된다면, 승인 여부도 자금의 가용성에 따라 달라진다.

(b) HRA 가 새 주택으로의 이사를 승인하였다면, HRA 는 월별 임대료 보조금을 재산정하며, 그 금액은 새 주택에 대한 리스 또는 렌트 계약이 발효한 날로부터 1 년간 변경될 수 없다. 새 주거지의 리스 또는 렌트 계약 발효일자가 가구의 금년도 프로그램 참여일로부터 기산하여 10 개월 이하인 경우, 가구의 금년도 LINC VI 임대료 보조금은 리스 또는 렌트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새로 시작된다. 새 주거지의 리스 또는 렌트 계약의 발효일자가 가구의 금년도 프로그램 참여일로부터 기산하여 10 개월을 초과하며 가구가 LINC VI 지원을 갱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 가구의 갱신 기간은 리스 또는 렌트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시작된다.

**[§ 7-23] § 7-06 기관 검토 회의 및 [HRA] DSS 행정 심리 과정.**

(a) [HRA] DSS 행정 검토 권한. [신청자 또는]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는 기관 검토 회의 및/또는 [HRA] DSS 행정 심리를 요청하여, [DHS 및/또는] HRA 가 본 [절] 장의 조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조치를 지체하였을 경우를 포함하여, 본 [절] 장에 따라 DHS 및/또는 HRA 에서 내린 결론 또는 조치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b) 기관 검토 회의.

(1) [신청자 또는] LINC VI 프로그램 참가자가 기관 검토 회의를 요청할 경우, HRA 는 해당 문제를 비공식으로 검토하고 해결하도록 한다.

(2) [신청자 또는] LINC VI 프로그램 참가자는 [HRA] DSS 행정 심리를 요청하지 않고도 기관 검토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기관 검토 회의를 요청하는 것이 신청자 또는 프로그램 참가자가 차후 [HRA] DSS 행정 심리를 요청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3) 기관 검토 회의는 이의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조치가 내려진 후 60 일 이내에 요청되어야 한다. 단, [HRA] DSS 행정 심리 일정이 정해진 경우, 기관 검토 회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진 행정 심리일 이전에 요청되어야 한다.

(4) 기관 검토 회의를 요청하게 되면 [본 조의 (c)항 (2)호] 7-06(c)(2)에 규정된 [HRA] DSS 행정 심리 요청 기한은 기관 검토 회의일부터 60 일까지로 연장된다.

(c) [HRA] DSS 행정 심리 요청.

(1) 행정 심리 요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면 요청서는 우편, 전자 수단 또는 팩스, 또는 이의 제기 통지서에 [HRA] DSS 가 명시한 기타 수단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 [본 조의 (b)항의 (4)호] 7-06(b)(4)에 규정된 내용은 제외하고, 행정 심리 요청은 이의의 대상이 되는 결정 사항 또는 조치가 이루어진 후 6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d) 권한을 가진 대리인.

(1) 서면 승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자 또는] LINC VI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리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기관 검토 회의 또는 행정 심리에서 [해당인] 참가자들을 대리하거나 [해당인] 참가자들의 사건 기록을 살펴보려면 [신청자 또는] 프로그램 참가자의 서면 승인서가 있어야 한다. 단, 해당 [신청자 또는] 프로그램 참가자가 수임한 변호사는 이러한 서면 승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해당 변호사의 직원은 변호사의 서면 승인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변호사가 [HRA] DSS 에 전화상으로 해당 직원에 대한 승인 내용을 알릴 경우 지정 대리인으로 간주된다.

(2) [HRA] DSS가 한 개인 또는 기관이 기관 검토 회의 또는 행정 심리에서 [신청자 또는] LINC VI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음을 고지받은 경우, 해당 대리인은 해당 회의 및 심리와 관련하여 [HRA] DSS가 해당 신청자 또는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발송한 모든 서신의 사본을 수령한다.

(e) 보조금의 지속.

(1) [HRA] DSS가 [본 장의 7-21] 7-04조에 따라 임대료 지급을 축소, 제한, 유예 또는 중단하거나 프로그램 참여 가구가 [7-20 조 (b)항] 7-03(b)에 따라 신청을 갱신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가 이에 대해 행정 불복 심리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참가자는 [본 조 (l)항] 7-06(l)에 따른 심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 수령하던 금액에 해당하는 LINC VI 임대료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권리가 있다. 단, 다음 조건이 적용된다.

(A) 프로그램 참가자는 해당 결정에 대한 통지문이 발송된 지 10일 이내에 행정 불복 심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B) 본 불복 심리 절차는 부정확한 산출 또는 부정확한 사실 판단을 근거로 제기되는 것이어야 한다.

(2) 불복에 대한 유일한 쟁점이 지방 정부, 주 정부 또는 연방 정부의 법 또는 정책이거나, 지방법, 주법 또는 연방법의 변경에 대한 것일 경우, 본 항에 의거한 지속적인 임대료 보조를 받을 권리가 없다.

(3) 다음의 경우, 심리 판결이 발표될 때까지 임대료 보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없다.

(A) LINC VI 프로그램 참가자가 서면으로 이러한 지원금을 계속 수령할 [본인의] 그들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였을 경우, 또는

(B) LINC VI 프로그램 참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 심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4) LINC VI 프로그램 참가자가 [본 조의 (m)항] 7-06(m)에 따라 추가로 불복 심리를 요청할 경우,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심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중단되지 않고, [해당 항] 7-06(m)에 따라 서면 판결문이 발행될 때까지 계속된다.

(f) 행정 심리 요청에 대한 사안이 해결되거나 [신청자 또는] LINC VI 프로그램 참가자가 [본인의] 그들의 심리 요청을 철회하지 않은 한, [HRA] DSS는 예정된 행정 심리일에서 역일 기준으로 최소 7일 이전에 행정 심리일, 시간 및 장소에 대한 통지문을 해당 [신청자 또는]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g) 케이스 기록 검토. [신청자 또는] LINC VI 프로그램 참가자 또는 [그의] 그들의 승인 대리인은 [그의] 그들의 LINC 프로그램 케이스 파일 및 HRA가 행정 심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문서와 기록을 검토할 권리가 있다. 전화 또는 서면 요청이 있을 시, HRA는 해당 [신청자 또는]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이러한 모든 문서의 사본과 해당 [신청자 또는] 프로그램 참가자가 행정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찾고 요청하는 HRA 및/또는 DHS 소유의 추가 문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한다. HRA는 이러한 문서를 행정 심리에 앞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에 대한 요청이 행정 심리가 열리기 전 영업일 기준 5일 미만의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도, HRA는 늦어도 행정 심리 시까지는 해당 문서의 사본을 해당 [신청자 또는]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h) 연기. 행정 심리는 행정 심리 사무관들의 요청이나, [신청자나] LINC VI 프로그램 참가자[,] 또는 HRA[이나 DHS]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에 의해 연기될 수 있다.

(i) 행정 심리의 실시.

(1) 행정 심리는 [HRA] DSS가 지명하는 공정한 심리 사무관에 의하여 실시되며 이 심리 사무관에게는 선서를 집행하고 소환장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의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조치에 관한 사실에 대해 사전에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행정 심리는 자유로운 형식을 취하며 관련된 중요 증거가 모두 채택될 수 있고 증거에 대한 법적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 심리는 해당 행정 심리 요청 사유인 결정 사항(들)과 관련하여 제기된 사실 관계 또는 법적 사안에 한정된다.

(3) [신청자, 또는] LINC VI 프로그램 참가자는 법적 대리인 또는 기타 대리인의 대리를 받고, 증언하고, 증인을 세우고, 증거 서류를 제출하고, HRA[ 및 DHS]가 제출한 증거에 반박할 증거를 제공하고, 심리 사무관에게 소환장 발부를 요청하고, HRA[ 및 DHS]가 제공한 일체 서류를 검토할 권리가 있다.

(4) 행정 심리에 대한 음성 녹음, 시청각 녹화 또는 필기록을 작성한다.

(j) 행정 심리 요청의 포기.

[(1) 해당 신청자나 프로그램 참가자나 그의 승인 대리인이 행정 심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HRA는 행정 심리 요청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신청자나 프로그램 참가자나 그의 승인 대리인이 다음을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다.

(A) 행정 심리가 열리기 전 심리 일정 조정을 위하여 HRA에 연락한 경우, 또는

(B) 예정된 행정 심리일로부터 역일 기준 15일 이내에 HRA에 연락하여, 예정된 일자에 행정 심리에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2) 신청자나 LINC VI 프로그램 참가자나 그의 승인 대리인이 본 항 (1)호의 요구 사항을 만족할 경우, HRA 는 해당 케이스의 일정을 다시 정한다.]

심리일 이전에 행정 심리 일정에 대한 변경 요청이 없었는데 LINC VI 프로그램 참가자나 그의 승인 대리인이 행정 심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DSS 는 행정 심리 요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LINC VI 프로그램 참가자나 그의 승인 대리인이 예정된 행정 심리일로부터 역일 기준 15 일 이내에 DSS 에 연락하여 예정된 일자에 행정 심리에 출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 DSS 는 케이스의 일정을 다시 정한다.

(k) 심리 기록. 심리에 대한 녹취 또는 필기록, 심리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서류 및 요청서 및 심리 판결문은 집합적으로 해당 행정 심리에 대한 완전하고 유일한 기록이 된다.

(l) 심리 판결.

(1) 심리 사무관은 오직 심리 기록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린다.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 행정 심리의 사안과 관련 사실과 해당 결정이 근거한 관련 법규 및 규정, 승인된 정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결정은 판단될 사안을 규명하고, 사실을 확정하고, 결정 사항에 대한 사유를 진술하고, 해당하는 경우 HRA 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한다.

(2) 결정문의 사본은 [신청자 또는] LINC VI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추가 심리 요청권 및 추가 심리 요청 절차에 대한 서면 통지서와 함께 각 당사자 및 해당하는 경우 승인 대리인에게 발송된다.

(m) 추가 불복.

(1) 심리 사무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HRA] 국장 [또는 그의 대리인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 이는 해당 결정문과 함께 발송된 통지문에 설명된 절차를 통해, [HRA] DSS 가 해당 결정을 발송한 후 늦어도 영업일 기준 15 일 이내에 [HRA 에 접수되도록] 국장이 접수하도록 해야 한다. HRA 국장 앞으로 제출될 기록은 해당 심리 기록, 심리 사무관의 결정문, 선서 진술서, 서류 증거 또는 [신청자나] LINC VI 프로그램 참가자가 제출하기를 원하는 서면 의견서로 구성되도록 한다.

(2) 국장 [또는 그의 대리인은 신청자 또는] LINC VI 프로그램 참가자 [및] 또는 HRA [또는 DHS]가 제출한 심리 기록 및 추가 서류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3) 국장의 결정문 사본이 [신청자 또는] LINC VI 프로그램 참가자의 사법 심사 요청권에 대한 안내서와 함께 각 당사자 및 해당하는 경우 승인 대리인에게 발송된다.

(4) 본 조에 따른 심리 절차에 따라 국장[이나 그의 대리인]이 결정을 내릴 경우 그 결정은 최종적이며 HRA 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HRA 는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7-24] § 7-07 추가 조항.**

(a) LINC VI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 참여 가구는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줄 서비스 제공 업체에 보내진다.

[(b) HRA 는 뉴욕 행정 규정 제 18 편 352.6 조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호소에서 이사를 나가는 가구에 이사비와 1 개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보증금 바우처를 제공한다.]

[(c) (b) LINC VI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되는 임대료 보조금은 케이스별로 결정되는 것을 제외한 여타의 임대료 보조금과 결합될 수 없다.

[(d) LINC VI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을 위한 대기자 명단은 관리되지 않는다.]

[(e) 보호소 거주자에게는 잠재적인 호스트 가족을 찾을 책임이 있다.]

[(f) (c) LINC VI 임대료 보조금을 받는 가구와 리스 또는 렌트 계약을 체결한 1 차 임차인은 합의된 월 임대료 금액을 초과하는 금전, 물품 혹은 서비스를 요구, 청구 혹은 수령할 수 없다. 임대차 계약에 명시된 월 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전, 물품 혹은 서비스를 요구, 청구 또는 수령한 1 차 임차인은 이후 HRA 의 모든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자격이 박탈되며 뉴욕시가 운영하는 기타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에도 참여가 금지될 수 있다. 1 차 임차인을 부적격자 명단에 등재하기 전, HRA 는 1 차 임차인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여 서면으로 반박할 기회를 제공한다.

[(g) (d) [가족 및 친구 재결합]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LINC VI 임대료 보조를 받는 가구와 리스 또는 렌트 계약을 체결한 1 차 임차인은 리스 또는 렌트 계약이 발효한 날로부터 1 년 동안은 가구의 월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

[(h) (e) 프로그램 참가자는 LINC VI 임대료 보조금이 적용되는 주택에 새로운 사람이 입주하는 즉시 HRA 에 통보하여야 한다.

[(i) (f) 프로그램 참가자가 LINC VI 임대료 보조금이 적용되었거나 현재 적용되는 주택으로부터 퇴거당하거나 이사를 나가는 경우, 1 차 임차인은 과지급금이 있는 경우 이를 HRA 에 반환하여야 한다.

[(j)] (g) LINC VI 임대료 보조금이 적용되는 모든 주택은 안전 및 주거 적합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해당 가구에 18 세 미만의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호스트 가족은 최소한 [아동 학대 및 부당 대우에 관한 주 중앙 등록처의 기록에 가족 구성원이 포함되었는가에 대한 평가와] 호스트 가족의 구성원에게 아동 보호 이력이 있는지 평가하고 뉴욕 교정법 6-C 조에 따른 성폭력범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확인을 거쳐야 한다.

§ 4. 뉴욕시 규정 제 68 편 7 장은 다음과 같이 7-08 조를 새로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 7-08 LINC VI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의 운영.**

2024 년 12 월 31 일부로 이 장의 조항들은 만료되고 이 장 전체가 폐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 5. 뉴욕시 규정 제 68 편 8 장(CITYFEPS 및 SEPS 프로그램)은 폐지한다.**

**§ 6. 뉴욕시 규정 제68편 10장 10-01조부터 10-04조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0-01 정의.**

본 장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들은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갖[는]게 된다.

(a) “ACS”는 뉴욕시 아동서비스국(New York City 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을 의미한다.

(b) [아파트] “아파트”는 SRO가 아닌 개인 거주지를 의미한다.

(c) “케이스 관리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1) 의료적 치료; (2) 출생 증명서, 혼인 증명서, 주거 기록 등과 같은 연방, 주, 지방 정부 문서, (3) 식품, 의약품 및 기타 생필품. 이런 서비스들은 또한 가정 내 폭력, 아동 학대, 정신 질환 등의 문제 중 해당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c)] (d) “CITYFEPS”은 본 편의 8장 A절 [에 따라 수립된]에서 기술한 뉴욕시 가족 강제 퇴거 방지를 위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d)] (e) “CityFHEPS”[는 본 장에서 기술한 CityFHEPS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혹은 “CityFHEPS 프로그램”이 본 장의 A절에서 쓰일 때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A절에서 기술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CityFHEPS" 혹은 "CityFHEPS 프로그램"이 본 장의 B절에서 쓰일 때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B절에서 기술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e)] (f) [A] "CityFHEPS 유자격 프로그램"[은]이란, HRA 또는 DHS 보호소에 입소하지 못하게 하거나[, HRA 또는 DHS 보호소에서] 그곳에서의 체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HRA가 [CityFHEPS] 본 장의 A절에서 기술한 프로그램에 대한 추천을 수락하는 프로그램으로, 국장이 지정한 시 프로그램이다. "CityFHEPS 유자격 [프로그램들] 프로그램"에는 국장이 향후 지정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 외에도 다음이 포함된다. (1) 가족 재결합, 유지 또는 독립적 생활을 위한 ACS 계획을 촉진하는 ACS의 추천, (2) 3분기 주택 대책반의 추천, (3) DYCD의 추천, 또는 (4) 뉴욕시 재활국(New York City Department of Correction)의 추천.

[(f)] (g)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본 장에 따라 이루어진 임대료 지급을 의미한다.

[(g)] (h) [A] "CityFHEPS 세대"[는]란 본 장에 따라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이 적용되는 주거 단위를 의미한다.

[(h)] (i) "국장"이란 DSS 국장 또는 국장의 대리인을 의미한다.

[(i)] (j) "DHS"란 뉴욕시 노숙자 서비스부(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를 의미한다.

[(j)] (k) "DHS 가족 보호소"[는]란 DHS가 운영하거나 DHS를 대신하여 운영되는, 아동이 있는 가족 또는 성인 가족을 위한 보호 시설을 의미한다.

[(k)] (l) "DHS 독신 성인 보호소"란 DHS에서 운영하거나 또는 DHS를 대신하여 운영되는 독신 성인을 위한 보호소를 의미한다.

[(l)] (m) "DSS"란 뉴욕시 사회복지 서비스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로서 HRA와 DHS로 구성된 단체를 의미한다.

[(l)] (n) "DYCD"란 뉴욕시 청소년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Youth and Community Development, DYCD)를 의미한다.

[(m)] (o) "연방 장애인 혜택"이란 연방 사회복지법 II편에 따른 사회 보장 장애 보험 혜택, 연방 사회복지법 XVI편에 따른 생활보조금(SSI), 미국 연방 법전 제38편 II부 11장 II절 또는 IV절에 따른 직무 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에 대한 보상, 또는 미국 연방 법전 제38편 II부 15장 II항에 따른 서비스 연계 장애 연금을 의미한다.

[(n)] (p) "FHEPS"란 뉴욕주 가족 퇴거 방지 보조(New York State Family Eviction Prevention Supplement, NYS FEPS)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o)] (q) "FPL"이란 미국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연방 빈곤선을 의미한다.

[(p)] (r) "총소득"이란 다음의 합을 의미한다. (1) 뉴욕 행정 규정 제18편 352.17(a)의 정의에 의거하되, 여름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Summer Youth Employment Program, SYEP)으로 발생한 수입을 제외한 근로소득. (2) 같은 제18편의 387.10(b)(3)의 정의에 의거하되, 공공 지원(Public Assistance, PA)은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포함하는 근로 소득. 제3자의 임대료 지원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뉴욕 행정 규정 제18편 387.11, 387.12조에 명시된 것을 포함하여 기타 모든 소득 공제 또는 예외는 가구 총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되지 않는다.

[(r)] (s) "HDC"란 뉴욕시 주택개발공사(New York City 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 HDC)를 의미한다.

[(q)] "가구" (t) "가구"란 CityFHEPS 세대에 함께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들을 의미한다.

(u) "HPD"란 뉴욕시 주택보전개발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를 의미한다.

[(r)] (v) "HRA"란 뉴욕시 인적자원관리국을 의미한다.

[(s)] (w) "HRA 보호소"란 뉴욕 행정 규정 제18편 452부에 따라 HRA가 운영하거나 또는 HRA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가정 폭력 쉼터를 의미한다.

[(t)] (x) "LINC VI"란 본 편의 7장 [C절에 따라 수립된] 에 기술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w) "최대] (y) "최대 월 임대료"란 본 장의 10-05절에 따라 결정되어 CityFHEPS 임대료 보조 첫해에 초과할 수 없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를 기준으로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액이 산정된다.

[(x) "최대] (z) "최대 PA 보호소 수당"은 뉴욕 행정 규정 제18편 352.3(a)(1)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각 PA 가구 규모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최대 월 보호소 수당을 의미한다.

[(y)] (aa) "NPA 가입자"란 CityFHEPS 가구 구성원이지만 뉴욕 행정 규정 제18편 349.3조 외에 다른 이유로 PA 가구 구성원이 아닌 개인을 [지칭]의미한다.

[(aa)] (bb) "PA"란 뉴욕 사회보장서비스법 § 349에 의거한 가족 지원(Family Assistance) 프로그램, 및/또는 뉴욕 사회보장서비스법 § 159에 의거한 안전망 지원(Safety Net Assistance)

프로그램, 그리고 그에 따라 공표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월 교부금 및 보호소 수당을 포함한 공공 지원 혜택을 의미한다.

[(bb) The] (cc) "PA 가구"[는]란 PA 수당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가구를 말한다.

[(cc)] (dd) "Pathway Home"이란 본 편 11장에 [따라 수립된] 기술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dd) "1차] (ee) "1차 임차인"[은]이란 리스 계약서에 이름이 있는 사람 혹은 주거지에 대해 매월 임대료를 지불할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ee) "프로그램] (ff) "프로그램 참가자"란 CityFHEPS 세대에 대한 리스 계약에 서명하고 프로그램으로부터 해지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ff) (gg) "적격 뉴욕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은 LINC, SEPS 또는 CITYFEPS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gg) "적격] (gg) "적격 보조금 지원 고용 프로그램"이란 뉴욕 행정 규정 제18편 385.9(f) 또는 (g)에 따라 HRA가 수립한 모든 보조금 지원 고용 프로그램이나, 국장이 향후 적격 프로그램으로 지정하는 다른 보조금 지원 고용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hh) "임대료 인상 제한 대상] (hh) "임대료 인상 제한 대상 아파트"는 뉴욕시 행정 법령(Administrative Code of the City of New York) 제26편 3장에 따라 최대 임대료가 설정된 주거 편의 시설을 의미한다.

[(ii) "방"] (ii) "방"은 아파트 내의 개별 방을 의미한다.

(jj) "SCRIE 또는 DRIE 프로그램"이란 뉴욕 부동산세법 467-b 및 467-c에 의해 승인되고 뉴욕시 행정 법령 제26편 3, 4, 7장에 따라 수립된 고령자 집세 인상 면제(Senior Citizen Rent Increase Exemption, SCRIE) 또는 장애인 집세 인상 면제(Disability Rent Increase Exemption, DRIE)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jj)] (kk) "SEPS"란 본 편의 8장 B절[에 따라 정립된]에서 기술한 특별 퇴소 및 예방을 위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kk) "구매 참조] (ll) "구매 참조 서신"이란 잠재적으로 CityFHEPS 프로그램에 대해 자격이 되는 가구를 찾고 최대 임대료를 목록을 작성하는 주택 탐색을 돕기 위해 가구에 제공되는 서신을 [지칭]의미한다.

[(ll)] (mm) "SRO"란 뉴욕 복합거주법(New York Multiple Dwelling Law) 1조 4항 16호에 정의된 것과 같은 1인실 공동 주택 세대를 [지칭]의미한다.

[(mm)] (nn) "거리 노숙자"란 [(1) 거리 또는 사람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살고 있으며] DHS 하청 아웃리치 제공 업체로부터 [최소 90일 동안] 케이스 관리 서비스를 [받는] 받고 있는 개인을 의미한다. [자, (2) 보호 센터 또는 임시 주거 환경에서 DHS 하청 업체로부터 최소 90일 동안 케이스 관리 서비스를 받은 자 또는 (3) DHS 하청 아웃리치 제공 업체로부터 케이스 관리 서비스를 받으면서 거리 또는 사람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 살고 있으며, 보호 센터 또는 임시 주거 환경에 거주하거나, 영구 주택에 배정되었으나 현재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는 자를 의미한다.]

(oo) "B절 제공 업체"란 10-16조에 따라 B절 세대로 지정된 세대들을 운영하도록 뉴욕시와 계약한 비영리 제공 업체를 의미한다.

(pp) "B절 세대"란 본 장의 B절에 따라 CityFHEPS 지급이 적용될 수 있는 세대로 HRA가 지정한 세대를 의미한다.

[(nn)] (qq) "보조금 지원 고용"이란 뉴욕 사회보장서비스법 § 336(1)(b)-(c)에서 사용된 용어처럼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 분야 고용 형태 또는 보조금 지원을 받는 공공 분야 고용 형태를 의미한다.

[(oo)] (rr) "SYEP 프로그램"은 유급 여름 취업 기회가 있는 연령이 14세 ~ 24세인 뉴욕시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뉴욕시 청소년 지역사회 개발부가 관리하는 여름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pp) 용어 "3쿼터] (ss) "3쿼터 거주시설(three-quarter housing) 대책반"이란 2017년 지방법 13의 1(a)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qq)] (tt) "뉴욕시 노숙 문제 타개책 마련(Turning the Tide on Homelessness in New York City)"이란 de Blasio 시장, Herminia Palacio 뉴욕시 보건 및 인적 서비스 부시장과 Steven Banks 국장이 2017년 2월 발간한 간행물[이]을 의미한다. 이 간행물은 뉴욕시의 노숙자 보호소의 발자취를 줄이고, 보호소 제공에 대한 뉴욕시의 접근 방식을 바꾸고, 퇴거 예방, 거리 노숙자 및 영구 주택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소에 의존하는 뉴욕시 노숙자 인구를 줄이려는 포괄적인 자치구 기반 계획을 제시한다.

[(rr)] (uu) "보조금 미지원 고용"이란 뉴욕 사회보장서비스법 § 336(1)(a)에 사용된 용어[처럼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고용 형태]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

[(ss) "재향 군인"은] (vv) "재향 군인"이란 미국 군대에서 복무한 자를 의미한다.

## § 10-02 CityFHEPS [프로그램의]프로그램들의 운영

HRA가 CityFHEPS [프로그램을]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며 본 [절]장에 따라 자격 여부를 판단한다. CityFHEPS 프로그램은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A절에 기술된 세입자 기반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과 B절에 기술된 프로젝트 기반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세입자 기반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요건에 부합한다면 어느 세대라도 자격이 있는 가구가 선택한 거주지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한다. 프로젝트 기반 프로그램은 HRA가 B절 세대라고 지정한 특정 세대에 연계된 자격이 있는 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한다.

### A절

#### CITYFHEPS: 세입자 기반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

§ 10-03 HRA 또는 DHS 보호소에 있거나 거리 노숙 중이 아닌 도시 거주자의 최초 자격, 신청 및 승인.

(a) 거리 노숙 중이 아닌 가구 또는 HRA나 DHS 보호소에 있지 않은 가구가 본 절에 따라 CityFHEPS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 최초 연도 신청 자격이 되려면, 가구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1) 10-03(a)(6)(D)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총소득이 FPL의 2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해당 가구가 현재 공공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면 해당 가구는 뉴욕 행정 규정 제18편 352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어떤 보조금이라도 신청해야 한다.

(3) PA 자격이 되는 모든 가구 구성원은 공공 지원을 받으며 PA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4) 가구가 8조 또는 본 편 9장에 [따라] 기술된 프로그램인 HRA HOME TBRA를 포함하여, 연방 또는 주 정부의 주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HRA의 요청에 따라 해당 가구가 혜택을 신청하고 제공 시 이를 수락해야 [한다]할 수 있다.

(5) 가구는 FHEPS 자격이 없어야 하고, [본 장] 10-08(d)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전에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6) 해당 가구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A) 국장은 판단에 의거하여 가구가 노숙자가 될 위험이 있다고 간주되고 재향 군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B) 지난 12개월 내에 가구는 퇴거 절차의 대상이었거나 현지 그 대상인 뉴욕 시내 소재의 거주지에서 퇴거 또는 거주했거나, 해당 가구가 시 기관이나 담보권 행사에 의해 발행된 퇴거 명령의 결과 또는 시 기관이 판단한 건강 및 안전상의 사유(뉴욕 행정 규정 제18편 452.9조에 따라 가구에 보호소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하는 사유 제외)로 퇴거했거나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 가운데 하나]

(i) 뉴욕 사회보장서비스법 473조에 따라 성인 보호 서비스를 받거나 뉴욕 사회보장서비스법 473-d에 따라 지역사회 후견인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는 경우;

(ii) 임대료 인상 제한 대상 아파트에서 그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CityFHEPS를 사용하게 될 경우; 또는

(iii) 과거에 DHS 보호소에 거주했었던 적이 있는 경우.

(C) 가구에 CityFHEPS 적격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시 기관이 추천한 개인이 포함되었고, 국장의 평가에 따라 가구의 특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DHS 보호소에 입소하지 않으려면 CityFHEPS 임대료 보조가 필요하다고 결정해야 한다.

(D) 가구는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LINC 인증 서류나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SEPS 또는 CITYFEPS의 구매 참조 서신을 받았으며 여전히

뉴욕시 규정 제68편 7, 8장에 따라 지원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경우, 가구는 본 목에 따라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다.

(1)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했거나 (2) 가구가 FHEPS 자격이 될 경우.] 총소득이 FPL의 250%를 넘지 않으며 10-21조에 따라 구매 참조 서신을 받도록 추천되었어야 한다.

(E) 현재 LINC VI 또는 Pathway Home 보조금을 수령 중이고 [본 장] 10-04(a)(8)(A) 또는 10-04(a)(8)(B)(i)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7) 가구는 뉴욕시에서 안전 및 거주 가능성 평가를 통과한 뉴욕시 거주지를 최소 1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리스 계약이나 기타 계약서, 또는 규제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세대에 대한 임대료는 반드시 세대가 위치한 곳에 있는 비견될만한 세대와 비교할 때 합리적이어야 하며 절대 최대 월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해당 가구는 최소 1년간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단, 해당 세대가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을 받기 직전에 가구가 거주했던 아파트이고 또한 해당 세대가] 임대료 허용에 관한 정부 규정의 대상이면 적용되는 정부 규정에 따라 연중 임대료 인상이 허용된다. 가구에 18세 미만인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리스 또는 렌트 계약은 아파트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b) 신청서는 HRA가 정하는 양식과 형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c) 해당되는 경우, HRA는 승인 시에 [본 장] 10-06 또는 10-07[조] 조에 따라 가구의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본 장] 10-09[조] 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면,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가구 구성, 소득, 최대 월 임대료 또는 CityFHEPS 세대의 실제 임대료 변동과 관계없이 [첫해 동안에는] 갱신 시까지 변경되지 않는다.

#### § 10-04 보호소 거주자와 거리 노숙자에 대한 최초 자격 및 승인

(a) HRA 또는 DHS 보호소에 거주 중이거나 거리 노숙 중인 가구가 본 절에 따라 CityFHEPS 임대료 보조에 대한 구매 참조 서신을 받을 자격이 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가구 총소득이 FPL의 2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해당 가구가 현재 공공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면 [해당 가구는] 뉴욕 행정 규정 제18편 352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어떤 보조금이라도 신청[해야 한]하도록 HRA가 가구에 요구할 수 있다.

(3) [PA 자격이 되는 모든 가구 구성원은 공공 지원을 받으며 PA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비워둬.

(4) 가구가 8조 또는 본 편의 9장에 기술된 HRA HOME TBRA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연방 또는 주 정부의 주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HRA의 요청에 따라 해당 가구가 혜택을 신청하고 제공 시 이를 수락해야 [한]할 수도 있다.

(5) 해당 가구는 FHEPS에 대한 자격이 없어야 한다.

(6) 가구 구성원이 뉴욕 행정 규정 제18편 452.9조에 따라 HRA 보호소에 거주할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었을 경우, 해당 가구는 그런 결정을 야기한 가정 폭력 가해자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7) 가구가 현재 DHS [가족 보호소] 가족 보호소에 있는 경우, 해당 가구는 뉴욕 행정 규정 제18편 351부 및 352부에 따른 DHS의 결정으로 보호소에 거주할 자격을 받아야 한다.

(8) 가구는 노숙 중이거나 폐쇄가 임박한 DHS 보호소에 거주하고 있거나 아래의 그룹 A 또는 그룹 B에 속해야 한다.

(A) **그룹 A:** 가구가 아래에 명시된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그룹 A에 속한다.

(1) 현재 DHS 보호소에 거주하고, 10-04(b)에 따라 보호소 체류 자격을 충족하거나 HRA 보호소 체류 자격이 있거나, (2) 현재 HRA 보호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i) 가구가 (AA) 18세 미만의 구성원을 포함하고 (BB) 보조금 미지원 고용이나 적격 보조금 지원 고용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합쳐 최소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며, 지난 30일간 그러한 고용으로 얻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 단, 관련 근무 경력이 있으나 최근에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인해 근무 시간이 급격히 감소한 가구의 우에는 국장의 승인 하에 모두 합쳐 최소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요건을 정당한 사유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다.

(ii) 가구가 18세 이상의 구성원으로만 구성되고 지난 30일간의 보조금 미지원 고용 또는 적격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근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다.

(iii) 가구에 18세 이상으로서 연방 장애인 혜택을 받거나, 월 공공 지원 보조금을 수령하고 문서화된 당사자의 장애에 근거하여 연방 장애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HRA에서 결정한 구성원이 있다.

(iv) 가구에 60세 이상의 구성원이 있다. 또는

(v) 뉴욕 행정 규정 제18편 385.2(b)(5)에 의거하여 PA 근무 활동을 면제 받은 18세 이상의 구성원이 있다.

(B) **그룹 B:** 가구가 현재 HRA 또는 DHS 보호소에 거주하고 아래에 명시된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그룹 B에 속한다.

(i) 가구에 재향 군인이 있다. 또는

[(ii) 가구가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LINC 인증 서류나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SEPS 또는 CITYFEPS의 구매 참조 서신을 받았으며 여전히 뉴욕시 규정 제68편 7, 8장에 따라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 다음의 경우, 가구는 본 목에 따라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다. (1)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했거나 (2) 가구가 FHEPS 자격이 될 경우.]

[(iii)] (ii) 가구에 CityFHEPS 적격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시 기관이 추천한 개인이 포함되었고, 국장의 평가에 따라 가구의 특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HRA 또는 DHS 보호소 체류 기간을 단축하려면 CityFHEPS 임대료 보조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b) 보호소 적격 체류 및 제한 규정:

(1) 보호소 체류 자격: 해당 가구가 역일로 최대 10일의 기간을 제외하고 승인 전 최소 90일간 DHS 보호소에 거주했다면 10-04(a)(8)(A)의 목적에 따라 보호소 체류 자격을 갖춘 것이다. DHS 독신 성인 보호소 거주자는 다음의 경우 10-04(a)(8)의 목적에 따라 보호소 체류 자격을 갖춘 것이다. (A) 지난 365일 중 최소 90일 이상을 DHS 보호소에 거주했다. 보호소 체류 자격을 얻은 가구는 유형이 다른 보호소 사이로 옮겨 다녀도 [본 조의 (c)항]10-04(c)에 따라 구매 참조 서신 받을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거리 노숙 중인 가구는 HRA 또는 DHS 보호소에 입소해도 구매 참조 서신 받을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2) 보호소 체류 자격 제한: 국장은 프로그램의 생존력을 지키기 위해 제한 기한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0-04(a)(8)(A)의 목적에 따라 주택 시장 상황, 보호소 가동률, 가용 자금 유무를 평가하여 보호소 적격 체류 개시 날짜를 설정할 수 있다. 국장은 주택 시장 상황, 보호소 가동률 및 가용 자금 유무를 추가 검토한 후에 제한 기한일을 철회할 수 있다.

(c) 가구가 [본 조의 (c)항]10-04(a)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국장은 가구에 대해 구매 참조 서신을 발행한다. 해당 서신은 만료일을 포함하며, 해당 가구가 승인 시점까지 [본 항의 (a)호]10-04(a)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D) CityFHEPS 구매 참조 서신을 받은 가구는 [뉴욕시에서 안전 및 거주 가능성 평가를 통과한 거주지를 최소 1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리스 또는 기타 계약이 있어야 한다. 세대에 대한 임대료는 최대 월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 1년간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가구원 중에 18세 미만인 자가 있을 경우 리스 또는 기타 임대 계약은 아파트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가구는 CityFHEPS 임대료 보조 승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가구는 뉴욕시에서 안전 및 거주 가능성 평가를 통과한 거주지를 최소 1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리스 계약이 있어야 한다.

(2) 가구에 18세 미만인 자가 있을 경우 리스 또는 기타 임대 계약은 아파트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3) 세대에 대한 임대료는 반드시 세대가 위치한 곳에 있는 비건될만한 세대와 비교할 때 합리적이어야 하며 절대 최대 월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는 10-15(h)에 따른 추가 지급이 적용되는 세대라면 규제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가구는 최소 1년간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단, 해당 세대가 임대료 허용에 관한 정부 규정의 대상이면 적용되는 정부 규정에 따라 연중 임대료 인상이 허용된다.

(5) 해당 가구가 현재 공공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면 해당 가구는 뉴욕 행정 규정 제 18편 352 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어떤 보조금이라도 신청해야 한다.

(6) 공공 지원 수령 자격이 되는 모든 가구 구성원은 공공 지원을 받으며 공공 지원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e) 해당되는 경우, HRA는 승인 시에 [본 장] 10-06 또는 10-07[조] 조에 따라 가구의 월별 임대료 보조금 금액을 산정한다. [본 장] 10-09[조] 조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면, 월별 임대료 보조금 금액은 가구 구성, 소득, 최대 월 임대료 또는 CityFHEPS 세대의 실제 임대료 변동과 관계없이 [첫해 동안에는] 갱신 때까지 변경되지 않는다.

**§7. 뉴욕시 규정 제 68 편, 제 10 장 10-05 조는 폐지하며 다음과 같이 10-05 조를 새로 추가한다.**

**§ 10-05 최대 월 임대료.**

(a) 10-15(h)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면, CityFHEPS 임대료 보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SRO나 아파트 사용에 대한 최대 월 임대료는 HRA가 연방 법규집 제24편 982.503조에 따라, 뉴욕시 주택국이 해당 조에 따라 채택한 기준에 맞추어 정한다. HRA는 현재의 최대 월 임대료를 HRA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b) 본 절에 따라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이 적용될 수 있는 방의 임대 계약 첫해 최대 월 임대료는 \$800이다. 방 임대의 경우 추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공공 지원을 받는 1차 임차인과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 계약 체결 날짜 현재 해당 가구의 월 임대료는 1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임대료와 뉴욕 행정 규정 제18편 352.3조에 따라 1차 임차인이 받는 보호소 수당의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2)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또는 임대료 인상 제한 대상 아파트 내 별도의 방은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임대할 수 없다.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방을 1차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했을 경우, 뉴욕 행정 규정 제9편 2525.7(b)에 따라 해당 가구의 월 임대료가 해당 가구의 비례 배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임대료 인상 제한 아파트의 방이 1차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되었을 경우, 해당 가구의 임대료는 임대주가 1차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방 임대료는 난방, 온수, 전기, 주방 가스(스토브가 전기 제품이 아닌 경우)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 8.** 뉴욕시 규정 제 68 편 10 장 10-06 조부터 10-10 조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0-06: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액 산정 – 아파트와 SRO**

(a) CityFHEPS 세대가 아파트 또는 SRO인 경우 월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액은 [본 조의 (b) 및 (c)항] 10-06(b)에 따라 산정하여, 최대 월 임대료까지 허용되는 CityFHEPS 세대의 실제 월 임대료에서 기본 프로그램 참여자 부담액을 뺀 값과 동일한 금액이 된다. [본 항의 목적과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액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LINC IV에서 CityFHEPS로 이전한 적이 있는 사람의 가구는 2인 가구로 간주한다.]

(b) 기본 프로그램 참여자 부담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가구 구성원이 공공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 참여자 부담액은 승인 또는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가구 총 월소득의 30%이다. 그러나 [본 장] 10-09(a) 또는 10-09(b) [(a) 또는 (b)호]에 따라 갱신이나 [보조금]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금액 재산정을 할 때, 해당 가구에 소득이 없으면, 기본 프로그램 참여자 부담액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공공 지원 보호소 수당의 최대 금액이 된다.

(2) 가구에 공공 지원을 받는 구성원이 한 명 이상 있으면, 기본 프로그램 참여자 부담액은 다음을 합한 금액이 된다. (A) 승인 또는 갱신 시점에 공공 지원 가구의 월 총소득의 30%

또는 총 공공 지원 가구 구성원의 최대 월 임시 보호소 수당 중 더 큰 금액, (B) NPA 가입자 월 총소득의 30%.

(c) 10-09[조] 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가구 구성, 소득, 최대 월 임대료 또는 CityFHEPS 세대의 실제 임대료 변동과 관계없이 갱신 시까지 변경되지 않는다.

(d) 승인이 [CityFHEPS 세대에 대해서 나게 되면 HRA는 첫 달 임대료와 이후 3개월 치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액을 임대주에게 지불한다.] 본 절에 따라 아파트 또는 SRO에 대해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을 받는 가구에 대해서 나게 되면 HRA는 다음 지급액을 임대주에게 지불한다.

(1) 해당 가구가 거주지에 남을 경우, HRA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첫 달 임대료에서 공공 지원 보호소 수당을 뺀 금액을 지불한다.

(2) 해당 가구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할 경우, HRA는 첫 달 임대료 전체와 이후 3개월 치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액을 지불한다. 상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HRA는 첫 달 임대료만 선불로 받겠다는 임대주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

(e) [이후,] 10-06(d)에 기술된 지급액을 지불한 후, HRA는 해당 가구가 자격을 유지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가용 자금이 있는 한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액을 매달 임대주에게 직접 지불[해야 할 것이]한다. 단, HRA가 뉴욕시 노숙 문제 타개책 마련(Turning the Tide on Homelessness in New York City)이라는 계획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국의 재량에 따라 필요 시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의 추가액을 미리 지불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 10-07: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액 산정 - 방.**

(a) CityFHEPS 세대가 방일 경우, 해당 가구의 기본 프로그램 참여자 부담액은 승인 당시 해당 가구의 실제 공공 지원 보호소 수당 또는 \$50보다 커야 한다. 가구의 CityFHEPS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 첫 4개월 치에 관하여 [본 조의 (c)항]10-07(c)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액은 최대 \$800까지인 CityFHEPS 세대의 실제 월 임대료에서 기본 프로그램 참여자 부담액을 뺀 금액이 된다.

(b) [본 장] 10-09[조] 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가구 구성, 소득, 최대 월 임대료 또는 CityFHEPS 세대의 실제 임대료 변동과 관계없이 갱신 시까지 변경되지 않는다.

(c) 승인이 [CityFHEPS 세대에 대해서 나게 되면 해당 가구가 보호소 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HRA는 첫 4개월 치 임대료 전액을 임대주에게 지불해야 할 것이다. HRA는 첫 달 임대료와 다음 3개월 치에 대한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액을 지불한다.] 방에 적용되는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을 받는 가구에 대해서 나게 되면, HRA는 다음 지급액을 임대주에게 지불한다.

(1) 해당 가구가 거주지에 남을 경우, HRA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첫 달 임대료에서 공공 지원 보호소 수당을 뺀 금액을 지불한다.

(2) 해당 가구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할 경우, 해당 가구가 보호소 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HRA는 첫 4개월 치 임대료 전체를 지불한다. 이 경우 HRA는 첫 달 임대료 전체와 이후 3개월 치의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액을 지불하는 것이다. 상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HRA는 첫 달 임대료만 선불로 받겠다는 임대주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

(d) [이후,] 10-07(c)에 기술된 지급액을 지불한 후, HRA는 해당 가구가 자격을 유지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가용 자금이 있는 한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액을 매달 임대주에게 직접 지불해야 할 것이다

#### **§ 10-08: 갱신과 복원**

(a) 10-11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금이 허락하는 한, 본 절에 따라 CityFHEPS 임대료 보조를 받고 있는 가구는 다음과 같은 지속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마다 이루어지는 보조금에 대한 자격 갱신을 4번까지 할 수 있다.

(1) 가구 총소득이 FPL의 250%를 넘지 않을 경우,

(2) 가구가 프로그램 요건을 상당히 잘 준수할 경우, 그리고

(3) 가구가 처음 승인받은 CityFHEPS 세대에 계속 거주하거나, 국장이 [본 장] 10-10[조] 조에 따라 새로운 세대로의 이사를 승인한 경우.

(b) 가구가 프로그램 요건을 상당히 잘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국장의 재량에 따라 해당 가구가 프로그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뉴욕 행정 규정 제18편 351.26조에 따라 CityFHEPS 프로그램에 대한 가구의 참여를 갱신할 수 있다.

(c) 가용 자금 유무에 따라, CityFHEPS 임대료 보조를 받는 가구는 [본 조 (a)항] 10-08(a)의 요건에 계속 부합하고 갱신 당시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부합하다면, 5년 후에도 CityFHEPS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추가 갱신할 수 있다.

(1) 가구에 60세 이상의 구성원이 있다.

(2) 가구에 다음과 같은 구성원이 있다.

(A) 연방 장애인 혜택을 받는 구성원 또는

(B) 지속적으로 월 공공 지원 교부금을 수령하고 문서화된 당사자의 장애에 근거하여 연방 장애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국장이 결정한 구성원.

(3) 가구가 자격을 유지하는 한 갱신을 계속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g)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장] 10-12(e)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본 호에 의거하여 갱신할 수 없다. 국장은 건강 및 정신 건강 문제, [사회보장서비스부]DSS의 실수, 실수를 만회하려는 노력 또는 가구의 통제를 벗어난 기타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을 결정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한다.

(d) 가용 자금 유무에 따라, 가구가 본 절에 의거하여 CITYFHEPS에 대해 갱신되지 않았다면, 가구가 복원 신청 시 본 절의 CITYFHEPS 갱신 요건을 충족하면 해지 후 1년 이내에 복원할 수 있다. 해지 후 1년이 넘게 지났을 경우 또는 최소 5년 이상 CityFHEPS 임대료 지원을 받은 가구가 본 절에 따라 CityFHEPS에서 해지된 경우, 해당 가구는 정당한 사유에 한하여 본 절에 따라 CityFHEPS를 복원할 수 있다.

[(e) 본 장의 10-11조에 따라 가구가 CityFHEPS로 이관되었거나, LINC VI 또는 Pathway Home 프로그램에서 이관되었을 경우, 가구가 LINC, LINC VI, CITYFEPS, SEPS 또는 Pathway Home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간은 본 조의 (a)항에 명시된 5년 제한에 포함된다. 단, CITYFEPS, LINC VI 또는 Pathway Home에 대한 금년도 프로그램 참여일로부터 10개월 안에 이관되는 가구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금년도 참여일은 무시된다. 그러나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이 CITYFEPS, LINC VI 또는 Pathway Home에 대한 가구의 금년도 참여일 후 10개월 이상 되었으면,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가구의 금년도 참여 기간은 1년으로 계산된다.]

[(f)] (e) 국장은 본 절에 의거하여 해당 가구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각 연도가 끝나는 시점에 갱신 자격을 결정하게 되며, 이는 자금의 가용 여부의 영향을 받는다. 해당될 경우 국장은 연간 갱신 전에 [본 장] 10-06 또는 10-07[조] 조에 따라 가구의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액을 다시 산정한다. [본 장] 10-09[조] 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면,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액은

가족 구성, 소득, 최대 월 임대료, 또는 CityFHEPS 세대의 실제 임대료 변동과 관계없이 첫해 갱신 기간 동안에는 변경되지 않는다.

**§ 10-09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 금액 조정, 임대료 보조금 지급 중단, 또는 갱신 이전 프로그램 해지**

(a) 가구의 소득 변화에 따라 가구의 기본 세입자 부담액이 줄어들게 된 경우, 국장은 가구의 요청에 따라 해당될 경우에 [본 장] 10-06 또는 10-07[조] 조에 따라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 금액을 재산정한다.

(b) 가구의 공공 지원 보호소 수당이 갱신 전에 증가하여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액과 공공 지원 보호소 수당의 합이 가구의 실제 혹은 최대 월 임대료 중 적은 액수를 초과할 경우, HRA는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금액을 가구의 공공 지원 보호소 수당 금액과 실제 혹은 최대 임대료 중 작은 금액의 차액이 되도록 줄여야 할 것이다.

(c) 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가구가 CITYFHEPS 세대를 떠날 경우.

(2) 임대주가 [본 장] 10-14[조] 조에 명시된 요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때 프로그램 참여자는 [본 장] 10-10[조] 조에 따라 이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3) CITYFHEPS에 대한 가구의 참여가 해지되고, 10-13(e)에 따라 지불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

(d) CityFHEPS 프로그램에 대한 가구의 참여는 [본 장의] 10-12조에 명시된 요건을 프로그램 참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못하거나 거부했다는 국장의 판단이 있을 경우 갱신 전에 해지될 수 있다.

**§ 10-10 이사.**

(a) CityFHEP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구는 본 절에 의거하여, 국장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새 거주지로 이사하는 경우 CityFHEPS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가구는 새 주택으로 이사하기 전에 해당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가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그와 같은 이사 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국장은 이사 후에 신청한 승인 요청도 고려할 수 있다.

(b) 국장은 가구가 방 리스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한 해당 가구가 방 하나에서 아파트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승인한다.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가구가 이사하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거나, 임대주가 리스 계약을 해지해줄 의향이 있어야 이사를 승인한다. 다른 모든 경우, 국장은 가구가 이사를 하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한 주거지에서 다른 주거지로 이사하는 것을 승인한다. 요청된 이사로 인해 현재 임차된 주택보다 임대료가 비싼 주택으로 가는 경우, 자금 사정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c) 국장이 새 CityFHEPS 세대로의 이사를 승인한 경우, 국장은 월별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액을 재산정한다. 이 금액은 [본 장] 10-09[조] 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CityFHEPS 세대에 대한 임대 계약 효력일로부터 1년 동안은 변경되지 않는다. 새 CityFHEPS 세대에 대한 임대 계약의 발효일이 CityFHEPS의 금년도 프로그램 참여일로부터 기산하여 10개월 이하인 경우, 가구의 금년도 CityFHEPS 프로그램 참여일은 임대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새로 시작된다. 새 거주지에 대한 임대 계약의 발효 일자가 가구의 금년도 프로그램 참여일부터 기산하여 10개월 이상이고 가구가 CityFHEPS 프로그램을 갱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 가구의 갱신 기간은 임대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시작된다.

**§ 9.** 뉴욕시 규정 제 68 편, 제 10 장 10-11 조는 폐지하며 다음과 같이 10-11 조를 새로 추가한다.

**§ 10-11 이전에 LINC, SEPS, CITYFEPS, CityFHEPS B 절 또는 Pathway Home 보조금을 수령한 가구.**

가구가 LINC, SEPS, CITYFEPS 또는 Pathway Home 프로그램에서 본 절에서 기술한 CityFHEPS 프로그램으로 이관된 경우, 혹은 본 절의 B절에서 기술한 CityFHEPS에서 이관된 경우, 가구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간은 10-08(a)에서 명시된 5년 제한에 다음과 같이 포함된다.

(a) CITYFEPS, CityFHEPS B절, LINC VI 또는 Pathway Home 프로그램에 대한 가구의 금년도 참여일 후 10개월 이내에 그러한 프로그램에서 이관되는 가구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서 가구의 금년도 참여일은 이관 시에 무시된다.

(b) CITYFEPS, CityFHEPS B절, LINC VI 또는 Pathway Home 프로그램에 대한 가구의 금년도 참여일 후 10개월 이상 지난 후에 그러한 프로그램에서 이관되는 가구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가구의 금년도 참여 기간은 이관 시에 1년으로 계산된다.

§ 10. 뉴욕시 규정 제 68 편 10 장 10-12 조부터 10-15 조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0-12 가구 요건.

(a) 해당 가구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1) 소득 및 가구 구성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2) 자격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입증 자료 및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액, 최대 월 임대료 및 가구 구성원의 필수 부담액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b) 해당 가구는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이 임대주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c) 공공 지원 자격이 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은 공공 지원을 받아야 한다.

(d) 가구가 8조 또는 FHEPS를 포함하여, 연방 또는 주 정부의 주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HRA의 요청에 따라, 해당 가구가 혜택을 신청하고 제공 시 이를 수락해야 [한]할 수도 있다

(e) 가구는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금액과 월 임대료의 차액에서 모든 공공 지원 보호소 수당 및 임대주에게 실제로 지불되는 제3자 부담금을 뺀 차액을 매달 임대주에게 지불해야 하고, 해당 가구의 임대료 지급이 밀리면 당국에 체납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f) 가구가 CityFHEPS 세대를 떠나는 경우 즉시 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g) 프로그램 참여자는 퇴거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h) 비워둠.]

[(i)] (h) 가구는 자격이 되는 모든 근로 지원에 대해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에는 근로소득세금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아동세금공제(Child Tax Credit, CTC), 자녀양육비세금공제(Child Care Tax Credit, CCTC) 등과 같은 공공 혜택과 세금 공제가 포함될 수 있다.

[(j)] (i) 가구는 모든 합리적이며 해당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프로그램 참가자로서의 임차권을 보존하고 자립으로 나아가기 위해 취업 알선, 임대주-임차인 중재, 재정 상담 및 퇴거 방지 서비스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적절한 서비스를 알아보아야 한다. 가구는 그들이 지정한 서비스 제공 업체 또는 현지 본부 사무소로부터 서비스이용에 도움을 받거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k)] (i) 방 또는 SRO를 임대하고 있는 프로그램 참가자가 [십팔 세] 18세 미만인 자를 가구에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반드시 10-10[조] 조에 의거하여 이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l)] (k) 가구 구성원이 뉴욕 행정 규정 제18편 452.9조에 따라 HRA 보호소에 거주할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었을 경우, 해당 가구는 그런 결정을 야기한 가정 폭력 가해자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m)] (l) 그 외로 가구는 CityFHEPS 운영에 있어 뉴욕시 당국과 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 § 10-13 기관 검토 회의 및 DSS 행정 심리 과정.

(a) DSS 행정 검토 요청권. 신청자, 보호소 거주자, 현/전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가구 구성원은 기관 검토 회의 및/또는 DSS 행정 심리를 요청하여, 본 [절] 장에 의거하여 내린 결정 사항 또는 조치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본 [절] 장을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조치를 지체한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b) 기관 검토 회의.

(1) 신청자가 본 조의 [(a)항]10-13(a)에 따라 기관 검토 회의를 요청하면, HRA는 제기된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한다.

(2) 신청자는 DSS 행정 심리를 요청하지 않고 기관 검토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기관 검토 회의를 요청하는 것이 차후 개인이 DSS 행정 심리를 요청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3) 기관 검토 회의는 이의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조치가 내려진 지 60일 이내에 요청되어야 한다. 단, DSS 행정 심리 일정이 정해진 경우, 기관 검토 회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진 심리일 전에 요청되어야 한다.

(4) 기관 검토 회의를 요청하게 되면 [본 조의 (c)항 (2)호] 10-13(c)(2)에 규정된 DSS 행정 심리 요청 기한은 기관 검토 회의일부터 60일까지로 연장된다.

(c) DSS 행정 심리 요청.

(1) 행정 심리 요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면 요청서는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이의 제기 통지서에 DSS에서 명시한 기타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2) [본 조의 (b)항의 (4)호] **10-13(b)(4)**에 규정된 내용은 제외하고, 행정 심리 요청은 이의의 대상이 되는 결정 사항 또는 조치가 이루어진 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d) 권한을 가진 대리인.

(1) 서면 승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에 의거하여 회의 또는 심리를 요청한 신청자를 대표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기관 검토 회의 또는 행정 심리에서 [당사자] 당사자를 대표하고 해당 케이스 기록을 검토해도 된다는 서면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단, 그러한 서면 승인서는 당사자가 위임한 변호사에게는 제출할 의무가 없다. 해당 변호사의 직원은 변호사의 서면 승인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변호사가 DSS에 전화상으로 해당 직원에 대한 승인 내용을 고지할 경우 위임 대리인으로 간주된다.

(2) DSS가 한 개인 또는 기관이 기관 검토 회의 또는 행정 심리에서 개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음을 고지받은 경우, 해당 대리인은 회의 및 심리와 관련하여 DSS가 해당 개인에게 발송한 모든 서신의 사본을 수령한다.

(e) [지원의 계속] 계속적 지원.

(1) 프로그램 참가자가 CityFHEPS 임대료 보조 지급금을 축소, 제한, 유예, 또는 중단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행정 불복 심리를 요청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 참가자는 [본 조 (l)항] **10-13(l)**에 따른 심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 수령하던 금액에 해당하는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권리가 있다. 단, 다음 조건이 적용된다.

(A) 프로그램 참가자는 해당 결정에 대한 통지문이 발송된 지 10일 이내에 행정 불복 심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B) 본 불복 심리 절차는 부정확한 산출 또는 부정확한 사실 판단을 근거로 제기되는 것이어야 한다.

(2) 불복에 대한 유일한 쟁점이 지방 정부, 주 정부 또는 연방 정부의 법 또는 정책이거나, 지방법, 주법 또는 연방법의 변경에 대한 것일 경우, 본 항에 의거한 지속적인 CityFHEPS 임대료 보조를 받을 권리가 없다.

(3) 다음의 경우, 심리 판결이 발표될 때까지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없다.

(A) 프로그램 참가자가 서면으로 이러한 지원금을 계속 수령할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였을 경우, 또는

(B) 프로그램 참가자가 행정 심리에 출석하지 않고 불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4) 프로그램 참가자가 [본 조의 (m)항] 10-13(m)에 따라 추가로 불복 심리를 요청할 경우,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심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중단되지 않고, [본 조의 (l)항] 10-13(m)에 따라 서면 판결문이 발행될 때까지 계속된다.

(f) 통지. DSS는 행정 심리 요청에 대한 사안이 해결되거나 개인이 자신의 심리 요청을 철회하지 않은 한, 역일 기준으로 예정된 행정 심리일에서 최소 7일 전에 행정 심리일, 시간 및 장소에 대한 통지를 본 조에 따라 심리를 요청한 개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g) 케이스 기록 검토. 본 절에 의거하여 회의 또는 심리를 요청한 개인 또는 해당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은 해당 CityFHEPS 프로그램 케이스 파일(있는 경우)의 내용과 HRA가 행정 심리에서 사용할 모든 서류 및 기록을 검토할 권리가 있다. 전화 또는 서면 요청이 있을 시, HRA는 해당 개인에게 이러한 모든 문서의 사본과 해당 개인이 행정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찾고 요청하는 HRA 소유의 추가 문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한다. HRA는 이러한 문서를 행정 심리에 앞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에 대한 요청이 행정 심리가 열리기 전 영업일 기준 5일 미만의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도, HRA는 늦어도 행정 심리 시까지는 해당 문서의 사본을 해당 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h) 연기. 행정 심리는 행정 심리 사무관의 요청, 심리를 신청한 개인이나 그의 승인 대리인의 요청, 또는 HRA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에 의해 연기될 수 있다.

(i) 행정 심리의 실시.

(1) 행정 심리는 DSS가 지명하는 공정한 심리 사무관에 의하여 실시되며 이 심리 사무관에게는 선서를 집행하고 소환장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의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조치에 관한 사실에 대해 사전에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행정 심리는 자유로운 형식을 취하며 관련된 중요 증거가 모두 채택될 수 있고 증거에 대한 법적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 심리는 해당 행정 심리 요청 사유인 결정 사항(들)과 관련하여 제기된 사실 관계 또는 법적 사안에 한정된다.

(3) 심리를 요청한 개인은 법적 대리인 또는 기타 대리인의 대리를 받고, 증언하고, 증인을 세우고, 증거 서류를 제출하고, HRA[가 제출한 증거에 반박할 증거를 제공하고, 심리 사무관에게 소환장 발부를 요청하고, HRA가 제공한 일체 서류를 검토할 권리가 있다

(4) 행정 심리에 대한 음성 녹음, 시청각 녹화 또는 필기록을 작성한다.

(j) 행정 심리 요청의 포기.

[(1) 심리일 이전에 행정 심리 일정에 대한 변경 요청이 없었는데 심리를 요청한 개인이나 그의 승인 대리인이 행정 심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DSS는 행정 심리 요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A) 행정 심리가 열리기 전 심리 일정 조정을 위하여 DSS에 연락한 경우, 또는
- (B) 예정된 행정 심리일로부터 역일 기준 15일 이내에 DSS에 연락하여, 예정된 일자에 행정 심리에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2) 심리를 요청한 개인이나 그의 승인 대리인이 본 항 (1)호의 요구 사항을 만족할 경우, DSS는 해당 케이스의 일정을 다시 정한다.]

심리일 이전에 행정 심리 일정에 대한 변경 요청이 없었는데 심리를 요청한 개인이나 그의 승인 대리인이 행정 심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DSS는 행정 심리 요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심리를 요청한 개인이나 그의 승인 대리인이 예정된 행정 심리일로부터 역일 기준 15일 이내에 DSS에 연락하여 예정된 일자에 행정 심리에 출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 DSS는 케이스의 일정을 다시 정한다.

(k) 심리 기록. 심리에 대한 녹취 또는 필기록, 심리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서류 및 요청서 및 심리 판결문은 집합적으로 해당 행정 심리에 대한 완전하고 유일한 기록이 된다.

(l) 심리 판결. 심리 사무관은 심리 기록에만 기반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 행정 심리의 사안과 관련 사실과 해당 결정이 근거한 관련 법규 및 규정, 승인된 정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결정은 판단될 사안을 규명하고, 사실을 확정하고, 결정 사항에 대한 사유를 진술하고, 해당하는 경우 HRA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한다.

(1) 결정문 사본은 각 당사자와 그들의 승인 대리인(있을 경우)에게 발송된다. 결정문에는 추가 이의를 제기할 권리에 대해 심리를 요청한 신청자에 대한 서면 통지와 그러한 이의 제기를 요청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2) HRA는 심리 사무관의 권한을 넘거나 연방, 주 또는 지방 법 또는 본 규정에 위배되는 심리 결정에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HRA가 심리 결정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위원장이

판단했을 경우, 위원장은 행정 심리를 요청한 신청자에게 알리고 해당 결정 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그러한 통보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법 심사 권리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m) 추가 불복.

(1) 심리 사무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국장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 이는 해당 결정문과 함께 발송된 통지문에 설명된 절차를 통해, **DSS**가 해당 결정을 발송한 후 늦어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HRA에 접수되도록] 국장이 접수하도록** 해야 한다. **HRA** 국장 앞으로 제출될 기록은 해당 심리 기록, 심리 사무관의 결정문, 선서 진술서, 서류 증거 또는 신청자나 프로그램 참가자가 제출하기를 원하는 서면 의견서로 구성되도록 한다.

(2) 국장은 신청인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 **[및 또는 HRA가 제출한 심리 기록 및 추가 서류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3) **국장 결정문의 사본**은 해당 신청자 또는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발송되는 사법 심사 요청 권리에 대한 안내서와 함께 각 당사자 및 승인 대리인(있는 경우)에게 발송된다.

(4) 본 조에 따른 심리 절차에 따라 국장이 결정을 내릴 경우 그 결정은 최종적이며 **HRA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HRA는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0-14 임대주 요건.**

(a)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가구와 아파트 리스 또는 기타 임대 계약을 체결한 임대주는 가구 구성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리스 또는 렌트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 또는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 요청 또는 수령할 수 없다.

(b) **HRA**가 월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및 월 공공 지원 보호소 지급액(있는 경우)을 매달 마지막 날까지 지급할 경우, 이 금액은 반대의 **CityFHEPS** 세대 임대차 계약 규정과 상관없이 당월 **CityFHEPS** 세대 임대료에 대해 적시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된다.

(c) 임대주는 **반드시 현금 보증금 대신 HRA 보안 바우처를 [받아야 하고]** 세입자로부터 추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다.

(d) 임대주는 **HRA**와 가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한 가구에서 다른 가구로 이주시킬 수 없다.

(e) 임대주는 **CityFHEPS** 임대료 지원이 적용되는 세대에 해당 가구가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HRA**에 통보해야 한다.

- (f) 임대주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입주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을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HRA에 통보해야 한다.
- (g) 임대주, 부동산 소유주 또는 부동산 관리 업체가 변경되면 임대주는 즉시 HRA에 통보해야 한다.
- (h) 가구가 CityFHEPS 세대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는 가구가 세대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HRA 지급을 반환해야 한다.
- (i) 임대주는 CityFHEPS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실수로 지급되었거나 임대주가 제출한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 또는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지불된 금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과다 지급액은 즉시 반환한다.
- (j) 임대주는 임대주 요건을 위반한 뉴욕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에 참여를 금지당할 수 있다. 임대주를 부적격자 명단에 등재하기 전, HRA는 임대주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여 서면으로 반박할 기회를 제공한다.

**§ 10-15 추가 조항.**

- (a)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은 실행 가능하고 법에 위배되지 않는 보조금의 조합을 국장이 사전에 승인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보조금과 결합할 수 없다. [그러나] 단,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은 뉴욕 행정 규정 제18편, 352.3조에 따라 제공되는 공공 지원 보호소 수당과는 조합이 가능하며, 다른 면에서는 CityFHEPS 프로그램에 대해 자격이 있는 가구라면 SCRIE 또는 DRIE 프로그램에 따라 동결된 임대료에 대해서도 적용받을 수 있다.
- (b) 신청자와 보호소 거주자에게는 적당한 주택을 찾을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호소 직원도 HRA 및 DHS 보호소 거주자의 주거지 탐색에 도움을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보호소 거주자 및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수령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 다른 이들에게는 CityFHEPS 구매 참조 서신이 제공된다.
- (c) HRA는 CityFHEPS [프로그램] 대기자 명단을 관리하지 않는다.
- (d) [본 조에 따라]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수령을 위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적격 가구의 수는 가용 자금의 규모에 따라 제한된다.
- (e)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허용 임대료 관련 정부 규제의 대상인 세대에 대해 리스 계약을 맺은 LINC VI 프로그램 참가자는 CityFHEPS에 대한 자격 요건을 침해하지 않고 임대료를 정하는

지방법, 주법 또는 연방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정부 기관이 승인한 요율로 리스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f) **CityFHEPS 프로그램** 참여 가구는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줄 서비스 제공 업체에 보내진다.

(g) HRA가 임대주들에게 **CityFHEPS [프로그램] 프로그램 참여 장려금**을 제공할 경우, 그러한 장려금은 이전 임차인이 **CityFHEPS[, FHEPS 또는 본 편의 7, 8장에 따른]** 임대료 보조금을 수령했던 세대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 없다. 단, 임대주는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리스 계약 위반 등 해당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는 예외다. 일반적으로 임대주가 임차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그 이유와 함께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한, 정당한 사유는 성립하지 않는다.

(h) 본 장에 상충되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HRA는 재량에 따라 다음 세대의 임대주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해당 세대는 규제 합의 또는 유사한 계약에 따라서 [뉴욕시 가옥주택보존및개발국(New York City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HPD)/뉴욕시 주택개발연합 (New York City 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 HDC)] **HPD/HDC** 마케팅 핸드북의 대상이어야 하고, 이로 인해 HPD 또는 HDC는 추천 대신 또는 추천에 따라 해당 세대가 노숙자 개인 또는 가족에 의해 채워질 것을 요구 또는 승인하며, 이때 해당 비용이 10-05조에 따른 **CityFHEPS** 최대 임대료와 규제 임대료 사이의 차액을 메워야 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그러한 경우, 가구에 대한 임대료는 **CityFHEPS** 신청에 대해 최초 승인이 이루어진 시점을 포함하여 10-05조에 규정된 최대 임대료를 초과해도 되지만, 규제 임대료를 초과하면 안 된다.

(i) 임대주는 가구 구성원의 배우자, 동거 파트너, 부모, 자녀, 의붓부모, 의붓자녀, 조부모, 손주, 형제자매, 의붓형제자매일 수 없다. 이 요건은 정당한 사유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

§ 11. 뉴욕시 규정 제 68 편 10 장은 다음과 같이 B 절을 새롭게 추가하여 개정한다.

## **B 절**

### **CITYFHEPS: 프로젝트 기반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

#### **§ 10-16 B 절 세대.**

(a) HRA 는 뉴욕시의 특정 거주 세대를 본 절에 따라 임대료 보조금이 적용되는 B 절 세대로 지정한다. B 절 세대는 비영리 제공 업체가 뉴욕시와의 계약 하에 운영할 것이며, DHS 보호소 안에서 10-03(a)(1)-(6) 또는 section 10-04(a)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인구를 타겟으로 한다. B 절 세대는 건물 전체나 한 건물 내의 상당수의 세대로 구성된다. HRA 는 제공 업체의 수용 능력, 지리적 위치, 드러난 조직력의 수준, 뉴욕시의 최대 이익을 포함하는 요인에 기초해 B 절 세대를 지정한다.

(b) B 절 세대의 임차인들은 제공 업체와 함께 서명한 입주 계약서나 임대료 안정화 리스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임대료는 계약에 의해 정해지며 세대에 대한 법적 임대료나 HRA 가 10-05 에 따라 설정한 최대 임대료 중 적은 액수를 따라야 한다.

(c) B 절 제공 업체는 B 절 세대 임차인들이 케이스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 10-17 최초 자격.**

본 절에 따라 CityFHEPS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 최초 연도 신청 자격이 되려면, 가구는 10-03(a)(1)-(6) 또는 section 10-04(a)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HRA 의 추천을 받은 후 B 절 세대에 지원하고 수용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

#### **§ 10-18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 금액 산정.**

(a) 본 절에 따라 가구를 대신해 지급하는 월별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 금액은 10-06(a) 및 (b)에 따라 10-05조에 명시된 최대 임대료를 사용하여 산정된다.

(b) 10-20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가구 구성, 소득, 최대 월 임대료 또는 CityFHEPS 세대의 실제 임대료 변동과 관계없이 갱신 시까지 변경되지 않는다.

(c) 월별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금액은 뉴욕시와 B 절 세대를 운영하는 비영리 제공 업체 사이의 계약에 따라 지급된다. 가구가 B 절을 떠날 경우, HRA 는 제공 업체에 대한 임대료 지급의



공백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제공 업체가 다른 적격 가구를 세대에 배정할 수 있도록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 **§ 10-19 갱신과 복원.**

(a) 자금의 가용 여부에 따라, 본 절에 의거하여 CityFHEPS 임대료 보조를 받고 있는 가구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에 지속적으로 부합할 경우 임대료 보조에 대해 해마다 이루어지는 갱신을 얻을 수 있다.

(1) 가구가 프로그램 요건을 상당히 잘 준수할 경우, 그리고

(2) 가구가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을 승인받은 세대에 계속 거주하고 해당 세대가 계속해서 B절 세대로 지정되는 경우.

(b) 가구가 프로그램 요건을 상당히 잘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국장의 재량의 따라 해당 가구가 프로그램 요건을 따르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뉴욕 행정 규정 제18편 351.26조에 따라 CityFHEPS 프로그램에 대한 가구의 참여를 갱신할 수 있다.

(c) 가용 자금 유무에 따라, 가구가 본 절에 의거해 CityFHEPS에 대하여 갱신을 얻지 못했다면, 복원이 적용되는 시점에 본 절에 의거해 CityFHEPS 갱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가구가 복원 신청 시 해지 후 1년 이내에 참여를 복원할 수 있다. 단, 10-20(e)에 따라 참여가 해지된 가구는 복원이 적용되는 시점에 본 절에 의거해 갱신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참여를 복원할 수 있고 그에 대한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금액은 0이 넘게 산정된다. 해지 이후 1년이 지난 경우, 가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본 절에 의거해 CityFHEPS 참여를 복원할 수 있다.

(d) 국장은 본 절에 의거하여 해당 가구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각 연도가 끝나는 시점에 갱신 자격을 결정하게 되며, 이는 자금의 가용 여부의 영향을 받는다. 연간 갱신 전에, 국장은 10-18조에 따라 가구의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액을 재산정한다. (b) 10-20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가구 구성, 소득, 최대 월 임대료 또는 CityFHEPS 세대의 실제 임대료 변동과 관계없이 첫째 갱신 기간 동안에는 변경되지 않는다.

**§ 10-20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 금액 조정, 임대료 보조금 지급 중단 및 갱신 이전 프로그램 해지.**

(a) 가구의 소득 변화에 따라 가구의 기본 세입자 부담액이 줄어들게 된 경우, 국장은 가구의 요청에 따라 10-18조에 따라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 금액을 재산정한다.

(b) 가구의 공공 지원 보호소 수당이 갱신 전에 증가하여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액과 공공 지원 보호소 수당의 합이 가구의 월 임대료 액수를 초과할 경우, HRA는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금액을 가구의 공공 지원 보호소 수당 금액과 임대료의 차액이 되도록 줄여야 할 것이다.

(c) 국장은 다음의 경우 본 절에 따라 가구를 대신한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가구가 B절 세대를 떠날 경우,

(2) 해당 세대가 더 이상 B절 세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3) City FHEPS에 대한 가구의 참여가 해지되어, 가구가 10-23조에 따라 본 절에 통합된 10-13(e)에 의거한 계속적 보조를 받지 않고 있을 경우.

(d) CityFHEPS 프로그램에 대한 가구의 참여는 10-22조에 명시된 요건을 프로그램 참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못하거나 거부했다는 국장의 판단이 있을 경우 갱신 전에 해지될 수 있다.

(e) 1년 이상 가구에 대한 임대료 보조 금액이 0인 경우 국장은 CityFHEPS 프로그램에 대한 가구의 참여를 갱신 전에 해지한다.

**§ 10-21 이사 및 CityFHEPS A절에 대한 추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HRA는 B절 세대 사이의 이사나 A절 구매 참조 서신 발급을 승인할 수 있다. 본 조의 목적을 위해 정당한 사유는 B절 세대가 B절 세대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지정되지 않을 예정인 경우, 또는 가족 구성원 수가 감소해 임대료와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금액의 차이가 가구의 월 총소득의 40%보다 커졌을 경우 등을 포함한다.

**§ 10-22 가구 요건.**

(a) 해당 가구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1) 소득 및 가구 구성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2) 자격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입증 자료 및 뉴욕시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 금액, 최대 임대료 및 가구 구성원의 필수 부담액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3)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을 임대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

(b) 가구는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 금액과 월 임대료의 차액에서 모든 공공 지원 보호소 수당 및 임대주에게 실제로 지불되는 제3자 부담금을 뺀 차액을 매달 임대주에게 지불해야 한다.

(c) 가구는 월 총소득이 감소하거나 가족 구성원 수가 변할 경우 즉시 임대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가구가 SRO에 거주하는데 가구에 18세 미만을 추가할 계획인 경우, 즉시 임대주에게 알려 10-21조에 따라 적절한 세대로의 이사를 승인받을 기회를 얻도록 해야 한다.

(d) 가구 구성원이 뉴욕 행정 규정 제18편 452.9조에 따라 HRA 보호소에 거주할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었을 경우, 해당 가구는 그런 결정을 야기한 가정 폭력 가해자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e) 그 외로 가구는 CityFHEPS 운영에 있어 뉴욕시 당국과 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 **§ 10-23 기관 검토 회의 및 DSS 행정 심리 과정.**

10-13 조는 본 절에 참조에 의해 통합된다. 본 절의 목적을 위해, 10-13 에 나오는 “CityFHEPS” 또는 “CityFHEPS 프로그램”은 본 절에 기술된 프로그램을 언급하는 것을 간주한다. 신청자, 보호소 거주자, 현/전 프로그램 참가자 또는 가구 구성원은 10-13 에 명시된 대로 기관 검토 회의 및/또는 DSS 행정 심리를 요청하여, 본 절에 의거하여 내린 결정 사항 또는 조치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본 절을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조치를 지체한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 검토 회의 및 행정 불복 심리 절차는 HRA 의 B 절 세대 지정이나 B 절 세대 지정 철회 결정에 대한 불복을 위해 이용될 수 없다.

### **§ 12. 뉴욕시 규정 제 68 편 11 장 11-01 조 (p)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p) "거리 노숙자"란 [(1) 거리 또는 사람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살고 있으며] DHS 하청 아웃리치 제공 업체로부터 [최소 90일 동안] 케이스 관리 서비스를 [받는] 받고 있는 자[, (2) 보호 센터 또는 임시 주거 환경에서 DHS 하청 업체로부터 최소 90일 동안 케이스 관리 서비스를 받은

자 또는 (3) DHS 하청 아웃리치 제공 업체로부터 케이스 관리 서비스를 받으면서 거리 또는 사람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 살고 있으며, 보호 센터 또는 임시 주거 환경에 거주하거나, 영구 주택에 배정되었으나 현재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는 자를 의미한다].

**§ 13. 뉴욕시 규정 제 68 편 11 장 11-03 조 (a) 및 (b)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Pathway Home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해당 가구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A) 해당 가구가 DHS 보호소에 거주하고,

(i) 본 장의 (b)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보호소 체류 자격이 있다. 또는

(ii) 본 [장] 편의 10-04(c)에 따라 CityFHEPS 구매 참조 서신이 있다.

(B) 해당 가구가 거리 노숙자이거나, 또는

(C) 해당 가구에 뉴욕시 재활국으로부터 양육권을 빼앗긴 DHS 보호소에 과거 상당 기간 체류한 자가 있고 국장이 당사자의 재입소를 피하려면 Pathway Home 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2) 해당 가구의 총소득 합계는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연방 빈곤선의 20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3) 해당 가구가 현재 공공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면 해당 가구는 HRA가 해당 가구에 자격이 있다고 결정한 [뉴욕 행정 법규] 뉴욕 행정 법규 제18편 352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어떤 보조금이라도 신청해야 한다.

(4) 공공 지원 자격이 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은 공공 지원을 받아야 한다.

(5) 가구가 현재 DHS 가족 보호소에 있는 경우, 해당 가구는 뉴욕 행정 규정 제18편 351부 및 352부에 따른 DHS의 결정으로 보호소에 거주할 자격을 받아야 한다.

(6) HRA는 해당 가구를 대신하여 Pathway Home 임대료를 지급한 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가구는 자신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가구 대신 HRA로부터 [본 장] 11-04[조] 조의 표에서 정한 최대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월 임대료로 받는 것에 동의하며, 뉴욕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가족 혹은 친구로 구성되는 호스트 가족을 지정하였어야 한다.

(8) 호스트 가족과 호스트 가족의 거주지는 [본 장] 11-07(h)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b) 보호소 적격 체류 및 제한 규정.

(1) 보호소 체류 자격. DHS 가족 보호소 거주자는 가구가 역일로 최대 10일의 기간을 제외하고 승인 전 최소 90일간 HRA 또는 DHS 보호소에서 거주했다면 11-03(a)(1)(A)(i)의 목적에 따라 보호소 체류 자격을 갖춘 것이다. DHS 독신 성인 보호소 거주자는 승인 365일 전 당사자가 적어도 90일 이상 HRA 또는 DHS 보호소에 거주했다면 11-03(a)(1)(A)(i)의 목적에 따라 보호소 체류 자격을 갖춘 것이다.

(2) 보호소 체류 자격 제한. 국장은 프로그램의 생존력을 지키기 위해 제한 기한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1-03(a)(1)(A)(i)] 11-03(b)(1)의 목적에 따라 주택 시장 상황, 보호소 가동률, 가용 자금 유무를 평가하여 보호소 적격 체류 개시 날짜를 설정할 수 있다. 국장은 주택 시장 상황, 보호소 가동률 및 가용 자금 유무를 추가 검토한 후에 제한 기한일을 철회할 수 있다.

**§ 14. 뉴욕시 규정 제 68 편 11 장 11-07 조 (h)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h) 모든 호스트 가족은 안전 및 거주 가능 여부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1) 해당 가구에 18세 미만의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호스트 가족은 최소한 [아동 학대 및 부당 대우에 관한 주 중앙 등록처의 기록에 가족 구성원이 포함되었는가에 대한 평가와] 호스트 가족의 구성원에게 아동 보호 이력이 있는지 평가하고 뉴욕 교정법 6-C조에 따른 성폭력범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확인을 거쳐야 한다.

(2) 호스트 가족에 18세 미만의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가구는 최소한 [아동 학대 및 부당 대우에 관한 주 중앙 등록처의 기록에 가구 구성원이 포함되었는가에 대한 평가와] 가구 구성원에게 아동 보호 이력이 있는지 평가하고 뉴욕 교정법 6-C조에 따른 성폭력범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확인을 거쳐야 한다.

§ 15. 뉴욕시 규정 제 68 편 11 장 11-07 조는 다음과 같이 (k)항을 새롭게 추가하여 개정한다.

(k) 호스트 가족에는 배우자, 동거 파트너가 어느 가구 구성원에 해당되더라도 들어갈 수 없고, 21 세 미만 가구 구성원의 부모 또는 의붓부모도 들어갈 수 없다. 이 제한사항은 정당한 사유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

**NEW YORK CITY MAYOR'S OFFICE OF OPERATIONS**

**253 BROADWAY, 10<sup>th</sup> FLOOR**

**NEW YORK, NY 10007**

**212-788-1400**

**CERTIFICATION / ANALYSIS**

**PURSUANT TO CHARTER SECTION 1043(d)**

**규정 제목: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 규정 개정안(Amendment of Rental Assistance Program Rules)**

**참조 번호: HRA-30**

**규정 제정 기관: 인적자원관리국**

본인은 이 사무소에서 뉴욕시 헌장 1043(d)의 요건에 따라 제안된 위의 규정에 관하여 분석하였고 위의 제안된 규정은 다음과 같음을 확인한다.

- (i) 규정이 다른 각 지역사회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한 언어로 작성되었고,
- (ii) 규정에 기술된 목적의 달성과 일관되게 규정이 다른 각 지역의 규정 준수 비용을 최소화하며,
- (iii) 위반, 위반의 시정, 또는 위반과 관련된 처벌의 조정 등을 수립하지 않기 때문에, 시정 기간(cure period)을 명시하지 않는다.

/s/ Francisco X. Navarro

뉴욕시 시장 운영실

2021년 7월 28일

날짜

**NEW YORK CITY LAW DEPARTMENT**

**DIVISION OF LEGAL COUNSEL**

**100 CHURCH STREET**

**NEW YORK, NY 10007**

**212-356-4028**

다음에 따른 인증

**CHARTER §1043(d)**

규정 제목: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 규정 개정안(Amendment of Rental Assistance Program Rules)

참조 번호: 2021 RG 024

규정 제정 기관: 인적자원관리국

본인은 이 사무소가 뉴욕시 헌장 1043(d)의 요건에 따라 제안된 위의 규정을 검토하였으며 위의 제안된 규정은 다음과 같음을 확인한다.

- (i) 법 조항의 승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작성되었고,
- (ii) 적용 가능한 다른 규정과 충돌하지 않으며,
- (iii) 실행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규정에 기술된 목적 달성을 위해 좁은 범위로 결론을 도출하였고,
- (iv) 실행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규정과 규정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설명하는 근거 및 목적에 대한 진술을 포함한다.

/s/ STEVEN GOULDEN

날짜: July 27, 2021

뉴욕시 변호인 대행